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제3호 중 “장외파생상품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장외파생상품에”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10조제3항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사회의 승인(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중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의 확인) 법 제17조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확인 받는 방식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조합·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다음 각 목의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결의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계투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

가. 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나.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다. 방문·전화 등을 하려는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소속

라. 방문·전화 등으로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마. 방문·전화 등으로 권유하려는 시간·장소

제24조제2항제1호 중 “권한 있는 기관”을 “권한 있는 기관(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법 또는 금융관계 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을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 및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만 해당한다):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기간”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고난도투자일임계약(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려기간

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금전신탁계약(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⑨ (생략)	제2조(정의)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⑩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u>장외파생상품에</u>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로 한정한다)	3.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0조제3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장외파생상품에</u>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② (생략)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4.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융상품 중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사
회의 승인(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중 이사회가 없는 경우는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말한다.)
을 받아야 한다. -----

-----.

제11조(적합성원칙) ①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보장성 상품
가.·나.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 중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부
가특약 등으로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원화로
환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를 포함한다.)

제11조의2(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의 확인) 법 제17조제2항, 법 제
18조제2항,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
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확인 받는 방식
을 말한다.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법인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단서 생략)
3. 조합·단체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 다. (생략)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1. 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
-----, (현행과 같음)
2. 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
-----, (현행과 같음)
3. 조합·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16조(부당권유행위 금지) ①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
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법 제21조제6호가목에 따른
행위

<신 설>

-----.

1. 투자성 상품에 대한 법 제21
조제6호 가목에 따른 행위로
서 계약체결을 권유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
내하고 금융소비자가 계약체
결의 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
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
외파생상품 및 제2조제1항제3
호에 따른 연계투자, 일반금융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
탁계약은 제외한다.)

가. 금융소비자의 연락정보
등 개인정보의 취득경로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표지나 증표를 사용할 것

나.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으로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다. 방문·전화 등을 하려는 방문판매자들의 성명, 소속

라. 방문·전화 등으로 판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내용

마. 방문·전화 등으로 권유하려는 시간·장소

제24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권한 있는 기관(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법 또는 금융관계 법률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 판매업자를 말한다.)-----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②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생략)
2. 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②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 및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만 해당한다):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또는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제37조(청약의 철회)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가. (생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다. (생략)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전신탁계약

가. (현행과 같음)

나. -----

-----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

-----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숙려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한다.)